

제411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의회의록

제 3 호

국회사무처

2023년12월2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105)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1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1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9)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0)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7)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1)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2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9)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7)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5)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3)
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2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4)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0)

32.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8)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6)
3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3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3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8)
3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
3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0)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국가보훈 장정에 · 국토교통 박상우) 인사 3
- 1.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6105) 4
-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인사 4
-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6) ... 4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 4
-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5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5
-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5
-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5
-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5
-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 5
-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5
-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 6
- 1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6
- 1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9) 6
-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7
- 1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 7
-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7
-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9) 8
-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0) ... 8
-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 8
-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7) 8
-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1) 8
- 22.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8
- 2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8
-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9) 9
-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7) 9
-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5) 10
-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3) 11

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11
2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4)	11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11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0)	12
3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8)	12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6)	12
3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13
3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13
3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8)	13
3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14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	14
3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0)	19

(14시16분 개의)

○의장 김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조정훈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21일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요청안, 12월 26일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용)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김희재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교통정책기본법안 등 4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국무위원(국가보훈 강정애·국토교통 박상우) 인사 (14시18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위원 두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이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임명된 강정애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여야 의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국가보훈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보훈이 국가 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보훈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박상우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가장 큰 민생 현안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희망의 주거사다리 복원과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에 제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겠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교통 혁신, 국민 생활 안전 등 국토교통부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국민 생활 안전 등 미래와 통합을 위해서 국토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의장 제의) (의안번호 2126105)

(14시21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임 국회사무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임명승인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한준호 의원, 유상범 의원, 윤창현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

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2분 투표개시)

○의장 김진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은 총 투표수 284표 중 가 260표, 부 17표, 기권 7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인사

○의장 김진표 그러면 신임 국회사무총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백재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국회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제21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요청드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표 백재현 사무총장 축하드립니다.

신임 사무총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6)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

(14시43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최승재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최승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최승재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홍걸·민형배·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고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최승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6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9인, 기권 2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627)

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84)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6)

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92)

1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44)

(14시47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4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임병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 및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8인 중 찬성 26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9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1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4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4인 중 찬성 273인, 기권 1인으로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9인 중 찬성 26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0)

12.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17)

13.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779)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2)

1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83)

1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79)

(14시53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1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설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설훈 위원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다 읽을 테니까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정책과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정보화 기반 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표 전에 내실화를 위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 수립·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설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64인, 기권 1인으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70인, 기권 2인으로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6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9)

1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0)

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8)

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7)

2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1)

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26)

23.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249)

(15시01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7항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우신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禹信九**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우신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철민 의원,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상당 기간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임신 중인 군인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나머지 6건의 법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우신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6인 중 찬성 25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8인 중 찬성 258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6인 중 찬성 251인, 반대 3인, 기권 12인으로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3인 중 찬성 252인, 반대 2인, 기권 9인으로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5인 중 찬성 259인, 기권 6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9)

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7)

(15시08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4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강병원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강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박병석 의원, 이만희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기간이 만료한 현수막은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아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정당 현수막의 내용까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규율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가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피케팅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한 것처럼 정당 현수막에 정치불신과 혐오를 불러오는 메시지가 아닌 민생을 위한 정책 중심의 메시지를 담아낸다면 이번 개정안이 더 빛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5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0인 중 찬성 269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5)

(15시11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6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윤준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산림조합 임직원 등의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 확보 등 안정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윤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3인 중 찬성 271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3)

2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666)

2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4)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41)

(15시13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27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영석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서영석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유상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병원지원금의 요구·수수 관

행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개설예정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이명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만성질환 등으로 치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으로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100)

32.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8)

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96)
(15시18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지성호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성일종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수장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수장 위생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김영주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김영주 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3인 중 찬성 271인, 반대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4인 중 찬성 272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권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4인 중 찬성 272인, 기권 2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6)

35.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02)

3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6088)

(15시22분)

○**부의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34항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상정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심상정**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위원입니다.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본회의장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님, 이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산

업단지 개발을 추가하는 것으로 철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으로 명확하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로 하려는 것으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 민홍철 의원, 이현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심상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6인 중 찬성 269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9인 중 찬성 268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8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2636)

(15시26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37항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임호선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스물아홉 분이 사망하고 사십 분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스포츠센터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미 대법원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명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행정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문을 삭제하며 보상이라는 문구는 지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회 여야가 함께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 내용에 대해 모든 유가족께서 만족하실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임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4인, 기권 3인으로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7)

(15시30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38항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의장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기간 18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지난 10월 24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60일이 경과함에 따라 국회법 제85조의2제7항에 의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

50억 클럽 의혹은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거론된 사람들에게 50억 원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실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광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인 광병채가 근무하였고 퇴직금으로 무려 50억 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광상도·박영수에 대한 의도적 부실 수사, 최재경·김수남·권순일에 대한 의도적 수사 기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검찰 스스로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행위자로 밝혀진 관련자들과 사업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의도적 부실수사로 무너져 내린 사법정의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강은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 장혜영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

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전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느 누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50억 클럽 본류 사건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광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성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시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세력의 수법이라며 대장동 특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여기 계신 수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임에도 특검만 주장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 특검법이 기존 검찰 수사를 대체할 만큼 공정하고 정교한 법률안입니까? 이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도 편파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률안입니다. 특검후보자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께서 그중 한 명의 특검을 임명하는 것인데, 헌정사상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과연 이들에 의해 추천된 후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면 고이예람 중사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의 사례와 같이 대한변협, 법원행정처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하면 됩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에게 특검추천권을 부여한 저의가 혹시 그동안 술한 정치거래를 해왔던 전례를 또다시 밟기 위한 의도입니까?

특검수사팀의 인원 및 수사기간은 또 어떻습니까? 수사팀 규모를 최대 94명까지 꾸려 최장 2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최장 120일이라는 통상의 특검법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화됨으로써 무의미한 정쟁만 유발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은 사실상 수사 과정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그간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사건건 트집 잡고 장관 탄핵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총선이 약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열세 번의 특검 중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특검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2012년 선관위 디도스 특검, 2건에 불과한데 이 2건은 추천권자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고 실시간 공보 규정도 없어 선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릅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자를 야당에 한정하고 있고 실시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며 선거일이 수사 기간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경제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미래 비전 및 공약을 제시해도 모자랄 시기에 정쟁의 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가는 것이 과연 옳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 대장동 수사를 검찰의 손에서 빼앗고 여론을 선동하는 총선용 당 대표 수사·재판 방해 특검법을 멈추어 주십시오.

국회가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정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성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의원 진보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상정되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야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니 오죽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50억 클럽 의혹에서 확장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나온 명단에 국민의힘 인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탄지를 걸 이유는 없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며 대장동 특검 도입을 야당 시절 요구한 정당, 바로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을 수족처럼 부려 가며 야당은 수사하고 여당은 덮어야 하는데 특별검사가 방해가 됩니까? 국회는 특검을 통해 두 사건의 전모를 모두 파헤치고 검찰이 뒤집어쓰고 있는 위선의 탈을 벗겨 낼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 상정된 쌍특검법에 대해 여당을 배제한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 수사 상황 생중계, 수사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걸고넘어지면서 쌍특검법을 악법이니 반헌법적이니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일 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시절 참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과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에도 특검에 대한 여당 추천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발의한 대장동 특검법안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작년 거제 대우조선에서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쳤던 유취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470억의 손해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합니다.

법은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정한데 수십억 너물과 횡령을 저지른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왜 이리도 따뜻하고 자애롭습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합니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던 전 법무부장관, ‘권력이 물라는 것만 물어다 주는 사냥개를 원했다면 저를 쓰지 말았어야지요’라고 말했던 당신은 오늘 결국 권력의 사냥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40년 전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고 군부독재 체제를 세웠다면 오늘은 검찰 출신들이 검찰독재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 셋만 평등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한 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하는 국민들의 분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갑진년 탄핵의 불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그 누구든 국민들이 준엄히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살아 있는 한, 촛불항쟁을 일으켰던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제아무리 철옹성 같은 검찰독재라 해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그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표 강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정의당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19년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각 당의 목적을 위해 50억 클럽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래하는 정치 야합의 흑역사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치와 상식에 맞아야 그 말이 말로 인정되듯이 법도 절차와 내용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을 때 법률로서 권위를 갖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수사 단계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엮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진실처럼 보여 주기 위한 정쟁 목적의 꼼수이자 총선용 압박입니다.

특검법이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여 총선에 정쟁으로 활용할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회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특검법 추진을 위해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회의를 감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단독 의결만 하고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보여 준 입법 폭주의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제도의 취지를 상실한 법안입니다.

먼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수사 대상 조항은 그토록 민주당, 정의당이 비판하는 별건수사가 마음대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 범위 이상으로 넓힐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시 관련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으니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높아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 추천을 전례 없이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법의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특검의 공정성, 객관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기소되어 이미 1심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중기소 금지의 원칙상 특검을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했다면 정쟁용 흠집 내기이며 모르고 했다면 지적 능력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0억 클럽 사안은 배임의 은폐와 축소를 약속했다는 것이 주내용이며 본체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행위입니다. 두 사안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아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당연히 그 본체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그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배임 수사 후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만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가 끝난 후에 특검을 운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보충성이라는 특검 제도의 취지까지 철저히 무시해 가며 불필요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끝까지 막으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아닌 당 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서 양심에 따라 반대 표결의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등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한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수사 방해요?

총선용 특검이라고요? 대선 때 그렇게 진실을 밝히자고 선동해 놓고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으며 이제는 총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은 되십니까? 그렇다면 대선 때의 특검 요구는 하지도 못할 쇼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검찰은 물증이 있음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궐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검사 출신인 궐 전 의원은 올해 2월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0억 클럽으로 돈은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판결은 정당하다, 이 수사에는 좌우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아들딸들에게 말하실 자신은 있으십니까?

검찰이 고위 법조인들을 감싸느라 부실하게 수사했다, 법조 카르텔이 발동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 국민들의 공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3월 말 검찰이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첫 강제 수사였지만 그것도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상정한다고 하니 검찰이 떠밀리듯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어도 검찰은 방관해 왔습니다. 이후 1년 11개월이나 걸려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의혹자들은 전혀 수사에 진척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지 말자는 것, 부실 수사를, 축소 수사를 인정하자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덮고 묻개고 빼주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법조 게이트를 이제는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60)

(15시57분)

○의장 김진표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38항과 마찬가지로 신속 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국회법 제85조의2제7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증입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이것을 성역, 특권,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배진교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

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 나고 진실 규명이 두려운 세력 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 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당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진표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

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의당이 갑자기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편파성, 위헌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특별검사를 선거용으로, 정쟁용으로 이용하려는 이 특검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의원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를 송기현 의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

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형수 의원 의석에서 — 여야 합의가 없었으면 안 했다고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의원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발언하시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형수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점잖으신 의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혐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은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동상정된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고 또 똑같이 국민의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님도 계십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그것을 불공정하다거나 잘못된 얘기라는 것은 정말 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불공정하지도 않고 잘못된 점도 없습니다. 수사가 실제와 다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과장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표 송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이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에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열도당토얌은 소리!」 하는 의원 있음)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해서 죄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지금 이 상황입니까?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그 상황 맞아요.)

김용민 의원님, 지금 이 상황입니까?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아요!)

아니지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8석 이상의 민주당하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 대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사건 아닙니까?

지난 2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모멸하는 거라니까요.

당시 변호인단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도 검찰이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검찰이 안 불렀을까?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 왜 안 불렀을까요?

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지요. 조치를 하면 무혐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불렀던 것 아닙니까?

왜,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옳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지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이나 배진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

어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은 우리 법 앞의 평등을 말씀 주셨고요 배진교 의원님은 성역 없는 수사, 성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니, 울산시장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와 상관없이 인도 타지마할과 그다음에 노르웨이 베르겐 관광성 여행을 하면서 국고 탕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전세기까지 목적 외로 해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용민 의원님, 특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님이나 배진교 의원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의당 의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에 민주당과 달해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위성정당 관련해서 뒤통수 심하게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가지고 또 정치적 거래를 해서 민주당의 총선캠프 들러리 서려고 그러십니까?

정의당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잠 이루시기 전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은 악법이기 이전에 법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조인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의장 김진표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

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해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상황을 보여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시세조종 목적의 통정매매임을 보여 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의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

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 모 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위조 같은 겉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저는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를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표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6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회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걸	김 회 재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중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김 회 곤 한 기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투표 의원(271인)****찬성 의원(269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흥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완 주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회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중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중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안 민 석 한 기 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1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점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중 헌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오 기 형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중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중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1인)

진 성 준

기권 의원(6인)

강 성 회	신 동 근	양이원영	윤 미 향
이 은 주	이 태 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5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검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형 배
민 흥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황 운 하 황보승희

반대 의원(1인)

진 성 준

기권 의원(3인)

강 성 희 윤 미 향 이 태 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9인)****찬성 의원(269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도 읍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민 철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병 기 김 상 훈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환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승 주 김 영 배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진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용 관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윤 덕 김 의 검
김 응 김 원 이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정 재 김 정 호 김 태 호 김 학 용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용 해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해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해	전 해 철	전 해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준 식	최 형 두

최 해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69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회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송 기 현	송 석 준
송 병 훈	송 갑 석	송 재 호	신 동 근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정 훈	심 상 정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안 철 수
안 규 백	안 민 석	양 경 숙	양 기 대
안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태영호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1인)

서병수

기권 의원(1인)

金炳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4인)

찬성 의원(273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이 인 재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대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기관 의원(1인)

윤 한 홍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4인)

찬성 의원(273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회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하 박 정 하 박 주 민
배 현 진 백 중 현 배 준 영 배 진 교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련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용 해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임 병 헌 임 병 헌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기권 의원(1인)
박수영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3인)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강병원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웅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1인)

임종성

기권 의원(5인)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유정주
이병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64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	-----	-----	-----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운	박대수
박대출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정숙
양향자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욱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호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영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철규	이태근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창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기권 의원(1인)

양이원영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0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정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웅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2인)

윤 주 경	이 해 식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57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웅	김 원 이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2인)

박 수 영 태 영 호

기권 의원(7인)

김 미 애 유 정 주 윤 한 홍 이 용 호
 이 태 규 정 경 희 정 동 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0인)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김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응 김 원 이
 김 의 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웅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2인)

박수영 태영호

기권 의원(6인)

강대식	안철수	윤한홍	이용호
정동만	홍문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68인)****찬성 의원(256인)**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철규	이태규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현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웅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2인)

박 수 영 태 영 호

기권 의원(10인)

강 대 식	권 명 호	김 미 애	박 대 출
유 경 준	윤 한 홍	이 용 호	전 봉 민
정 경 희	최 재 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74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우 신 구

유 기 홍

유 정 주

윤 상 현

윤 재 갑

윤 창 현

이 개 호

이 병 훈

이수진(비)

이 용 선

이 은 주

이 재 명

이 종 성

이 학 영

임 병 현

임 호 선

장 혜 영

전 주 혜

정 동 만

정 점 식

정 태 호

조 명 희

조 웅 천

주 철 현

천 준 호

최 영 희

최 춘 식

한 기 호

한 준 호

허 종 식

홍 성 국

황보승희

오 영 환

우 원 식

유 동 수

윤 건 영

윤 영 덕

윤 재 욱

윤 한 홍

이 달 곤

이 상 현

이 양 수

이 용 우

이 인 선

이 재 정

이 주 환

이 해 식

임 오 경

장 경 태

전 봉 민

전 해 철

정 성 호

정 진 석

정 필 모

조 승 래

조 정 식

지 성 호

최 기 상

최 인 호

최 형 두

한 무 경

허 숙 정

홍 기 원

홍 영 표

황 운 하

용 해 인

위 성 곤

유 상 범

윤 두 현

윤 영 석

윤 주 경

윤 호 중

이 동 주

이 성 만

이 용

이 용 호

이 인 영

이 정 문

이 철 규

이 형 석

임 이 자

장 동 혁

전 용 기

전 해 숙

정 우 택

정 청 래

정 희 용

조 오 섭

조 정 훈

진 선 미

최 승 재

최 재 형

최 해 영

한 병 도

허 영

홍 문 표

홍 익 표

우 상 호

유 경 준

유 의 동

윤 미 향

윤 영 찬

윤 준 병

윤 후 덕

이 만 회

이 수 진

이 용 빈

이 원 택

이 장 섭

이 종 배

이 태 규

인 재 근

임 종 성

장 철 민

전 재 수

정 경 희

정 일 영

정 춘 숙

조 경 태

조 은 희

조 해 진

진 성 준

최 연 숙

최 종 윤

하 태 경

한 정 애

허 은 아

홍 석 준

홍 정 민

기권 의원(1인)

태 영 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60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1인)

강민국

기권 의원(6인)

구자근 김미애 김웅 배준영
양정숙 이용선

(우신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
으로 정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8인)**찬성 의원(258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1인)

박 수 영

기권 의원(9인)

김 미 애	변 재 일	유 경 준	윤 한 홍
이 용 호	정 경 희	정 동 만	최 재 형
태 영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51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웅	김 원 이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오 기 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반대 의원(3인)

강민국	박수영	태영호
-----	-----	-----

기권 의원(12인)

권명호	김미애	김민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윤한홍	이용호
이태규	정경희	정동만	최재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66인)****찬성 의원(264인)**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회재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결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대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2인)

안 철 수 정 경 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52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용 진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의 검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해 숙	정 경 희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2인)

박 수 영 최 재 형

기권 의원(9인)

권 명 호	김 미 애	유 경 준	윤 한 홍
이 성 만	이 용 호	이 태 규	정 동 만

태영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59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병원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운	박대수
박대출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욱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용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허숙정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기권 의원(6인)

강민정	문정복	윤한홍	이수진(비)
이태규	허영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69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웅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대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숙 정	허 영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기권 의원(1인)

김 한 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73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정숙 설훈성일종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정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반대 의원(1인)

강성희

기권 의원(1인)

윤주경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0인)

찬성 의원(269인)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회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오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기권 의원(1인)

안 병 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71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박 덕 흙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성 민 박 성 준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수 영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윤 상 현 윤 영 덕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호
이 용 빈 이 원 택 이 용 우 이 인 선
이 원 욱 이 장 섭 이 은 주 이 재 정
이 인 영 이 종 배 이 재 명 이 주 환
이 정 문 이 채 익 이 종 성 이 학 영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임 병 헌
이 해 식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대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2인)

권 은 희 김 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75인)****찬성 의원(274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철 승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응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중 헌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정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대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1인)

양 정 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투표 의원(271인)**

찬성 의원(271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여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윤희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재욱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웅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5인)

강기윤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종 헌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중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태 호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준 숙	정 태 회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준 식	최 형 두	태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기권 의원(4인)

강 득 구	안 철 수	이 태 규	허 숙 정
-------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2인)

찬성 의원(272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용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종 헌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양 경 숙	양 정 숙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관
김 웅	김 원 이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희 곤	김 희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71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반대 의원(2인)

박 수 영 한 기 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투표 의원(274인)****찬성 의원(272인)**

강 기 윤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흥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검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길
김 회 재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흥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흥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회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태 규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강 대 식 박 수 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74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기 현	김 남 국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용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중 민
김 주 영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회 재	김 회 곤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백 종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욱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욱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봉 민	전 용 기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회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회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중 식	홍 기 원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2인)

이 달 곤 이 채 익

(서영교·하태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69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성 중	박 수 영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헌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중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희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헌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해 영
전 봉 민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해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7인)

장 민 정	김 병 옥	김 석 기	문 정 복
용 해 인	윤 건 영	한 무 경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68인)

강 기 윤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국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회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구 자 근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미 애	김 민 기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 炳 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웅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성준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최연숙	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종윤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태영호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한정애	하태경	한기호	한병도
허은아	한준호	허숙정	허영표
홍석준	홍성국	홍기원	홍익표
		홍영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기권 의원(1인)
 김주영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8인)

찬성 의원(278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관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엄태영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만 희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양 수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해 영
전 봉 민	전 재 수	전 주 혜	전 해 철
전 혜 숙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우 택	정 일 영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희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기 호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보승희
황 운 하	황 희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선	김 영 식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예 지	김 용 민	김 용 판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호	김 학 용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형 동	김 홍 결
김 회 재	김 회 국	남 인 순	노 용 호
노 웅 래	류 성 결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대 수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민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정 하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배 진 교	배 현 진	백 종 현	백 해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범 수	서 병 수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서 일 준
서 정 숙	설 훈	성 일 종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언 석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병 길	안 철 수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금 회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엄 태 영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신 구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경 준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상 범	유 의 동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두 현	윤 미 향
윤 상 현	윤 영 덕	윤 영 석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재 옥	윤 주 경	윤 준 병
윤 창 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달 곤	이 동 주	이 명 수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용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용 호	이 원 옥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선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종 배	이 종 성	이 주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태 규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병 현	임 오 경
임 이 자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해 영	전 봉 민
전 재 수	전 주 혜	정 우 택	정 경 희
정 동 만	정 성 호		정 일 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64인)

강 대 식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명 호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은 희
권 인 숙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옥
金炳旭	김 병 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주	김 성 환

정 점 식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태 호
정 필 모	정 회 용	조 경 태	조 명 희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은 희	조 응 천
조 정 식	조 정 훈	조 해 진	주 철 현
지 성 호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승 재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인 호	최 재 형	최 종 윤	최 춘 식
최 형 두	최 혜 영	태 영 호	하 태 경
한 무 경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은 아	허 종 식
홍 기 원	홍 문 표	홍 석 준	홍 성 국
홍 익 표	홍 정 민	황 운 하	황 희

기권 의원(3인)

박 성 중 송 석 준 황보승희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장혜영 의원 등 172인 발의)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민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회 재	남 인 순	노 응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흥 근
배 진 교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병 훈
이 상 현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탄 희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철 민	장 혜 영	전 용 기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일 영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인 호	최 종 윤	최 혜 영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종 식	홍 기 원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 운 하
황 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배진교 의원 등 172인 발의)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강 득 구	강 민 정	강 병 원	강 선 우
강 성 희	강 은 미	강 준 현	강 훈 식
고 민 정	고 영 인	고 용 진	권 은 희
권 인 숙	권 칠 승	기 동 민	김 경 만
김 경 협	김 교 홍	김 남 국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민 석	김 민 철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병 주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환	김 수 홍	김 승 남	김 승 원
김 영 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용 민	김 원 이	김 윤 덕	김 의 겸
김 정 호	김 종 민	김 주 영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한 규	김 한 정
김 홍 결	김 회 재	남 인 순	노 응 래
도 종 환	류 호 정	맹 성 규	문 정 복
문 진 석	민 병 덕	민 형 배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범 계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배진교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현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용혜인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장혜영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표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희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김희국	남인순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수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진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현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송갑석	송옥주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철수	안규백	안민석	안병길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금희
어기구	엄태영	양정숙	양향자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유정주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영찬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현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호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철규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주혜
전해철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우택	정일영	정점식
정진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출석 의원(289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권은희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기현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식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재

정필모	정희용	조경태	조명희
조수진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인호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형두	최혜영	태영호
하영제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보승희	황운하
황희			

○개회 시 재석 의원(238인)

강기윤	강대식	강득구	강민국
강민정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도읍	김두관	김미애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金炳旭
김병주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선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민
김용판	김웅	김원이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김태년
김태호	김학용	김한규	김한정
김형동	김홍걸	김희재	김희곤
노용호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대출	박범계	박상혁	박성민
박성준	박성중	박수영	박영순
박재호	박정	박정하	박주민
박찬대	박형수	박홍근	배준영
배진교	배현진	백종헌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범수	서병수
서삼석	서영석	서일준	서정숙
설훈	성일종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심상정	안민석	안병길	안철수
안호영	양경숙	양금희	양기대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용혜인

우상호	우신구	우원식	위성곤
유경준	유기홍	유동수	유상범
유의동	윤건영	윤두현	윤미향
윤상현	윤영덕	윤영석	윤재갑
윤재옥	윤주경	윤준병	윤창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주	이만희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	이수진(비)
이양수	이용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택	이은주
이인선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채익
이탄희	이태규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병헌	임오경
임이자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철민	장혜영	전봉민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경희
정동만	정성호	정일영	정점식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정희용	조명희	조승래	조오섭
조은희	조정식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지성호	진성준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최춘식	최혜영	태영호	하태경
한기호	한무경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숙정	허영	허은아
허종식	홍기원	홍문표	홍석준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181인)

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성희	강은미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은희
권인숙	권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홍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규	김한정
김홍걸	김희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호정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 광 온	박 범 계	박 상 혁	박 성 준
박 영 순	박 용 진	박 재 호	박 정
박 주 민	박 찬 대	박 홍 근	배 진 교
백 혜 련	변 재 일	서 동 용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영 석	설 훈	소 병 철
소 병 훈	송 갑 석	송 기 현	송 옥 주
송 재 호	신 동 근	신 영 대	신 정 훈
신 현 영	심 상 정	안 규 백	안 민 석
안 호 영	양 경 숙	양 기 대	양이원영
양 정 숙	양 향 자	어 기 구	오 기 형
오 영 환	용 혜 인	우 상 호	우 원 식
위 성 곤	유 기 홍	유 동 수	유 정 주
윤 건 영	윤 미 향	윤 영 덕	윤 영 찬
윤 재 갑	윤 준 병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동 주	이 병 훈	이 상 헌
이 성 만	이 소 영	이 수 진	이수진(비)
이 용 빈	이 용 선	이 용 우	이 원 택
이 은 주	이 인 영	이 장 섭	이 재 명
이 재 정	이 정 문	이 탄 희	이 학 영
이 해 식	이 형 석	인 재 근	임 오 경
임 종 성	임 호 선	장 경 태	장 동 혁
장 철 민	장 혜 영	전 용 기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혜 숙	정 성 호	정 일 영
정 청 래	정 춘 숙	정 태 호	정 필 모
조 승 래	조 오 섭	조 응 천	조 정 식
주 철 현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준 호
최 기 상	최 인 호	최 종 윤	최 혜 영
한 병 도	한 정 애	한 준 호	허 숙 정
허 영	허 종 식	홍 기 원	홍 성 국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정 민	황 운 하
황 희			

○청가 의원(6인)

김 승 수	박 진	이 상 민	이 현 승
주 호 영	추 경 호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백 재 현
입 법 차 장	권 영 진
의 사 국 장	정 명 호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상 민
국 가 보 훈 부 장 관	강 정 애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조 규 홍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식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박 상 우

○출석 정부위원

법 무 부 차 관 (장관직무대행)	이 노 공
국 방 부 차 관 (장관직무대리)	김 선 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장관직무대리)	한 훈
환 경 부 차 관 (장관직무대리)	임 상 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김 소 영

【보고사항】

○안전조정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국토교통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2023. 12. 27.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조승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2023. 12. 22.
환경노동	이학영	김병기		
국토교통	김병기 이소영	이학영 조승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이소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2023. 12. 28.
국토교통	조승래	이소영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조정훈	국민의힘	2023. 12. 27.

○의안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서병수·임병헌·류성걸·권성동·
안병길·장기윤·태영호·이태규·金炳旭·
한무경·전주혜 의원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21.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태열) 인사청문
요청안

(2023. 12. 21. 대통령 제출)

12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서병수·태영호·류성걸·홍문표·
최재형·이인선·이현승·권은희·전봉민·
지성호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김민기·권인숙·김승원·김영진·박광온·백혜련·심상정·이탄희·정춘숙·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김용관·하영제·백종현·박덕흠·서일준·박대수·박성민·이종성·이주환·권명호·홍석준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김성원·이인선·박대수·이종성·이주환·최춘식·박성민·최영희·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21.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2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김승수·박성민·이용·지성호·박대수·박덕흠·태영호·성일종·김예지·최영희·주호영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김승수·박성민·이용·지성호·박대수·박덕흠·태영호·성일종·김예지·최영희·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최혜영·임호선·홍성국·서영석·김민석·인재근·신정훈·맹성규·김두관·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최혜영·임호선·홍성국·서영석·인재근·신정훈·김민석·맹성규·김두관·허숙정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강훈식·이용빈·신정훈·김한규·임호선·송갑석·기동민·장철민·이성만·김홍걸·김종민·김정호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1. 신현영·최기상·이소영·조오섭·

허종식·홍정민·고영인·김민기·양이원영·김성주·김병기·설훈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21.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윤창현·김희곤·박대수·金炳旭·조정훈·이용·전주혜·김승수·정우택·윤한홍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23. 12. 22. 정부 제출)

이상 8건 1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영식·김용관·배준영·지성호·박대수·金炳旭·홍석준·노용호·정희용·박성중 의원 발의)

12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승수·박성민·이용·지성호·박대수·박덕흠·태영호·성일종·김예지·최영희 의원 발의)

12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승수·김석기·윤창현·홍문표·황보승희·이용·김성원·지성호·박대수·태영호·박성민·서일준 의원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승수·김석기·윤창현·홍문표·황보승희·이용·김성원·지성호·박대수·태영호·박성민·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희재 · 박영순 · 신정훈 · 김승남 · 소병철 · 이동주 · 이상현 · 이개호 · 이병훈 · 서동용 · 김경만 의원 발의)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승수 · 김석기 · 윤창현 · 홍문표 · 김성원 · 박대수 · 지성호 · 태영호 · 박성민 · 황보승희 · 서일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2. 김승수 · 김석기 · 윤창현 · 홍문표 · 김상훈 · 김성원 · 황보승희 · 이용 · 지성호 · 박대수 · 태영호 · 박성민 · 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22. 정부 제출)

12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조정훈 · 이종성 · 김예지 · 태영호 · 윤창현 · 유상범 · 이인선 · 박형수 · 홍석준 · 박수영 · 전주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김영식 · 김용관 · 배준영 · 지성호 · 박대수 · 김炳旭 · 홍석준 · 노용호 · 정희용 · 박성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 · 김성원 · 최영희 · 전봉민 · 김학용 · 백종현 · 구자근 · 김용관 · 이인선 · 정운천 · 이현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박성민 · 이명수 · 서일준 · 이현승 · 정동만 · 김승수 · 정경희 · 전봉민 · 서정숙 · 구자근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박성민 · 이명수 · 서일준 · 이현승 · 정동만 · 정경희 · 전봉민 · 서정숙 · 구자근 ·

강민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박성민 · 이명수 · 서일준 · 이현승 · 정동만 · 김승수 · 정경희 · 전봉민 · 서정숙 · 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 · 서일준 · 이용호 · 주호영 · 김희곤 · 박성민 · 강기윤 · 김웅 · 金炳旭 · 한기호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 · 서일준 · 이용호 · 주호영 · 김희곤 · 박성민 · 강기윤 · 김웅 · 金炳旭 · 한기호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 · 김상훈 · 서일준 · 이용호 · 주호영 · 김희곤 · 박성민 · 강기윤 · 김웅 · 金炳旭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김상훈 · 조수진 · 강대식 · 이명수 · 태영호 · 김형동 · 엄태영 · 안철수 · 김승수 · 송석준 · 강기윤 · 유의동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 · 김상훈 · 서일준 · 이용호 · 주호영 · 김희곤 · 박성민 · 강기윤 · 김웅 · 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 · 김성원 · 최영희 · 전봉민 · 김학용 · 백종현 · 구자근 · 김용관 · 정운천 · 이현승 의원 발의)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 · 김상훈 · 서일준 · 이용호 · 주호영 · 김희곤 · 박성민 · 강기윤 · 김웅 · 金炳旭 의원 발의)

1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조정훈·이종성·김예지·태영호·윤창현·유상범·이인선·박형수·홍석준·전주혜·박수영·홍문표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김성원·최영희·전봉민·김학용·백종현·구자근·김용관·이인선·정운천·이현승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김성원·최영희·전봉민·김학용·백종현·구자근·김용관·이인선·정운천·이현승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김성원·최영희·전봉민·김학용·백종현·구자근·김용관·이인선·정운천·이현승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이주환·김성원·최영희·전봉민·김학용·백종현·구자근·김용관·이인선·정운천·이현승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조태웅) 인사청문요청안

(2023. 12. 26. 대통령 제출)

12월 27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6. 유의동·서일준·이용호·박성민·주호영·김희곤·강기윤·김웅·金炳旭·한기호 의원 발의)

12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7. 조정훈·태영호·이종성·김예지·윤창현·최재형·강기윤·정우택·홍문표·이인선 의원 발의)

교통정책기본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7. 엄태영·박성민·한무경·조명희·하태경·이명수·노용호·정동만·홍문표·하영제·권성동·이용·김형동·김윤덕·박대수·김상훈·유상범·김학용·윤한홍·지성호·박형수·이태규·허영·맹성규·

김두관·장철민·심상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27. 위성곤·어기구·윤재갑·허숙정·신정훈·윤미향·주철현·최인호·이개호·허영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27. 정부 제출)

이상 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27. 정무위원장 제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12. 27. 국방위원장 제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3. 12. 27.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3. 12. 2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12. 2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27.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국회사무총장(백재현) 임명승인안

(2023. 12. 28. 의장 제의)

○의안 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2. 4. 13. 이용우·김진표·노웅래·송영길·이병훈·이수진·이수진(비)·정필모·최기상·홍정민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6. 김홍걸·김경협·김병기·김수홍·문진석·박주민·안민석·이규민·이용빈·이상헌·임오경·임호선·조오섭·홍정민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1. 3. 31. 민형배·김한정·민병덕·배진교·송재호·이용빈·이정문·이해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이철규·박대수·정희용·김성원·정운천·이용·서일준·최영희·양금희·정점식·윤주경·구자근·박정하·권명호·윤한홍·강기윤·조명희·한기호·노용호·권성동·백종현·유상범·김도읍·정진석·윤두현·김선교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윤한홍·김희곤·권성동·윤창현·김선교·유경준·권명호·이철규·엄태영·김승수·이인선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정무위원장 보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윤후덕·박상혁·김철민·박정·우원식·김정호·양경숙·홍기원·이동주·이형석 의원 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1. 10. 6. 민홍철·김홍걸·정성호·신정훈·최인호·양향자·윤후덕·이광재·서영교·기동민 의원 발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

홍영표 의원 발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종민·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허중식·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김진표·이상헌·양기대·신정훈·전혜숙·김철민·안규백·조승래·윤영찬·한준호·한기호·김병주·이현승·성일중·박성중·송갑석·기동민·정성호·최형두·유기홍·윤후덕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3. 7. 28. 김진표·이상헌·양기대·신정훈·전혜숙·김철민·안규백·조승래·윤영찬·한준호·한기호·김병주·이현승·성일중·박성중·송갑석·기동민·정성호·최형두·유기홍·윤후덕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송갑석·이개호·조오섭·박광운·김원이·민형배·이형석·이용빈·김병주·이병훈·윤영덕·양향자·김영배·신영대·김주영 의원 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8. 12. 진성준·천준호·소병훈·박상혁·김두관·김정호·우원식·조오섭·진선미·허영·이규민·이동주·김원이·이해식·이학영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2. 21. 신원식·백종현·황보승희·조수진·윤두현·윤주경·최재형·홍석준·전주혜·성일중 의원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조태용·김석기·김태호·박진·서정숙·성일중·송언석·신원식·유상범·윤두현·윤주경·이채익·정경희·정진석·정찬민·조명희·조수진·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25. 정성호 · 김두관 · 김병기 · 김병주 · 김승남 · 김영배 · 양경숙 · 양향자 · 유정주 · 윤건영 · 윤준병 · 정일영 · 정태호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 · 기동민 · 김민기 · 강병원 · 김병기 · 김홍걸 · 안민석 · 민홍철 · 홍영표 · 정태호 · 안규백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민홍철 · 임호선 · 김병욱 · 김두관 · 장철민 · 한준호 · 김윤덕 · 한정애 · 강득구 · 조오섭 · 전재수 · 김정호 · 김민기 의원 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 12. 24. 정부 제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9. 정부 제출)

(이상 11건 수정하여 의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김철민 · 서동용 · 이정문 · 윤후덕 · 안규백 · 강선우 · 민형배 · 안민석 · 조승래 · 유기홍 · 윤준병 · 박정 의원 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7. 4. 김병주 · 민병덕 · 강득구 · 송옥주 · 윤영덕 · 이용빈 · 윤재갑 · 강민정 · 유정주 · 송갑석 · 이탄희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 · 강병원 · 기동민 · 김두관 · 김병기 · 김홍걸 · 민홍철 · 안규백 · 안민석 · 정태호 · 홍영표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6. 설훈 · 강선우 · 김민석 · 김의겸 · 김태년 · 류호정 · 민홍철 · 박광온 · 서영교 · 서영석 · 양기대 · 이동주 · 이병훈 · 이원욱 · 전해숙 · 정태호 · 한정애 의원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민홍철 · 임호선 · 김병욱 · 김두관 · 장철민 · 한준호 · 김윤덕 · 한정애 · 강득구 · 전재수 · 김정호 · 김민기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설훈 · 양경숙 · 김병주 · 김홍걸 · 윤후덕 · 송갑석 · 배진교 · 윤영덕 · 기동민 · 홍영표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설훈 · 양경숙 · 김병주 · 김홍걸 · 윤후덕 · 송갑석 · 윤영덕 · 기동민 · 홍영표 · 송옥주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5. 26. 정부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6. 7. 안규백 · 강득구 · 고용진 · 기동민 · 김수홍 · 김철민 · 박홍근 · 신영대 · 양기대 · 우원식 · 유동수 · 이성만 · 전재수 · 천준호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7. 13. 한기호 · 강대식 · 김영선 · 김희곤 · 임병헌 · 신원식 · 성일중 · 윤주경 · 지성호 · 하태경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 · 강병원 · 기동민 · 김병기 · 김홍걸 · 민홍철 · 안규백 · 안민석 · 정태호 · 홍영표 의원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3. 4. 17. 이현승 · 김미애 · 최영희 · 김선교 · 한무경 · 권성동 · 김성원 · 서병수 · 전봉민 · 김炳旭 · 서일준 · 박성민 · 김도읍 · 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8건 국방위원장 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

(2023. 6. 14. 권은희 · 엄태영 · 임호선 · 김영호 · 소병훈 · 최연숙 · 오영환 · 용혜인 · 인재근 · 강은미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최영희 · 박대수 · 임이자 · 홍문표 · 황보승희 · 김성원 · 태영호 · 구자근 · 김희국 · 장동혁 · 권명호 · 송석준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김성원 · 김희곤 · 이주환 · 정우택 · 이종배 · 지성호 · 박대수 · 이종성 · 태영호 · 최영희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17. 송석준 · 류성걸 · 金炳旭 · 임병헌 · 김상훈 · 김예지 · 정우택 · 황보승희 · 윤주경 · 박대수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박병석 · 박영순 · 한병도 · 김민석 · 김상희 · 고용진 · 유정주 · 정필모 · 양정숙 · 윤미향 · 강준현 · 서동용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김미애 · 백종현 · 임병헌 · 최승재 · 송석준 · 김승수 · 조은희 · 윤상현 · 金炳旭 · 이채익 · 성일중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3. 4. 18. 이만희 · 권성동 · 김상훈 · 박성민 · 이용호 · 이태규 · 장제원 · 전봉민 · 정우택 · 정점식 · 조은희 · 허은아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민형배 · 민병덕 · 변재일 · 김홍걸 · 김철민 · 김용민 · 최강욱 · 문정복 · 김병욱 · 강민정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8. 17. 박성민 · 김형동 · 박대수 · 안철수 · 구자근 · 강민국 · 김희곤 · 유의동 · 이종성 · 이현승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이현승 · 최영희 · 이주환 · 박덕흠 · 박성민 · 한무경 · 김성원 · 홍문표 · 서병수 · 안병길 · 정동만 · 전봉민 · 윤상현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9. 5. 류성걸 · 이현승 · 박덕흠 · 김용환 · 최영희 · 엄태영 · 안병길 · 서병수 · 홍문표 · 김학용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강병원 · 임호선 · 오영환 · 송재호 · 임종성 · 최기상 · 한정애 · 권인숙 · 권칠승 · 천준호 · 이수진 · 정태호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한정애 · 박성준 · 양경숙 · 전해숙 · 김상희 · 이광재 · 강병원 · 김영배 · 박재호 · 설훈 · 이수진(비) · 최기상 · 임호선 의원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0. 이해식 · 김영배 · 김한규 · 한병도 · 박상혁 · 임호선 · 송기현 · 오영환 · 허영 · 김원이 · 서영교 · 서영석 · 안호영 · 김두관 · 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9. 윤준병 · 김태년 · 양정숙 · 이용선 · 소병훈 · 김철민 · 안규백 · 양기대 · 김승남 · 고영인 · 양경숙 · 김성주 · 오영환 의원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안호영 · 신정훈 · 위성곤 · 김윤덕 · 김승남 · 서삼석 · 소병훈 · 김경만 · 이해식 · 윤미향 · 조오섭 · 송재호 · 양정숙 · 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3. 9. 18. 유상범 · 조수진 · 박형수 · 서정숙 · 김예지 · 지성호 · 송석준 · 조정훈 · 장동혁 · 정점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정춘숙 · 윤관석 · 김영진 · 김민석 · 김정호 · 김윤덕 · 최혜영 · 윤후덕 · 권칠승 · 김상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9. 3. 서정숙 · 김예지 · 구자근 · 정운천 · 백종현 · 이종성 · 김승수 · 권성동 · 조태용 · 조수진 · 김선교 · 정경희 · 박대수 · 김미애 · 조명희 · 윤주경 · 권명호 · 이영 · 정찬민 · 박형수 · 하영제 · 유상범 · 김형동 · 강민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10. 강병원 · 기동민 · 김민석 · 김성주 · 김정호 · 서영석 · 오영환 · 이수진 · 이수진(비) · 전해숙 의원 발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3. 전봉민 · 김도읍 · 이현승 · 안병길 · 조경태 · 정동만 · 김희곤 · 황보승희 · 서병수 · 백종현 · 이주환 · 서범수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이명수 · 구자근 · 권은희 · 김영선 · 박성민 · 서일준 · 성일중 · 이만희 · 조명희 · 조은희 · 최승재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이정문 · 안민석 · 이동주 · 김철민 · 문진석 · 김홍걸 · 김윤덕 · 임호선 · 박상혁 · 민형배 · 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영진 · 김윤덕 · 홍성국 · 진성준 · 이정문 · 조오섭 · 노용래 · 임호선 · 이수진(비) · 최종윤 · 유정주 · 허영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8. 지성호 · 권명호 · 박대수 · 김승수 · 김형동 · 서정숙 · 김성원 · 최승재 · 유상범 · 이달곤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전용기 · 이학영 · 안호영 · 서삼석 · 오영환 · 송갑석 · 장경태 · 임종성 · 허영 · 김수홍 · 최승재 · 김윤덕 · 김경협 · 강선우 · 임오경 · 최혜영 · 박홍근 · 양향자 · 전재수 · 신정훈 · 윤재갑 · 임호선 · 양경숙 · 이동주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성일중 · 지성호 · 김영식 · 김태흠 · 송언석 · 장제원 · 김기현 · 이명수 · 김선교 · 권성동 · 이태규 · 이종배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진성준 · 최기상 · 강병원 · 유정주 · 김성주 · 강득구 · 위성곤 · 김병욱 · 김남국 ·

이해식 · 김영진 · 강선우 · 박상혁 · 고민정 · 김정만 · 우원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박성준 · 강준현 · 김교홍 · 김민기 · 민병덕 · 신정훈 · 양정숙 · 윤재갑 · 이용빈 · 정일영 · 최인호 · 허종식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27. 김영주 · 김정호 · 서영교 · 한준호 · 김희재 · 김태년 · 조오섭 · 이원욱 · 정태호 · 신영대 · 임호선 · 김승남 · 최혜영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윤준병 · 김철민 · 민병덕 · 위성곤 · 양경숙 · 이병훈 · 한병도 · 서영교 · 민형배 · 신정훈 · 오영환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3. 7. 20. 김영선 · 이명수 · 최영희 · 임병현 · 성일중 · 조해진 · 황보승희 · 백종현 · 강기윤 · 이종성 · 김태호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7. 24. 지성호 · 노용호 · 박정하 · 김성원 · 권명호 · 권성동 · 정우택 · 박대수 · 양금희 · 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9. 정우택 · 김영식 · 박정하 · 양향자 · 윤상현 · 최춘식 · 노용호 · 박대수 · 황보승희 · 홍문표 · 김성원 · 이명수 · 유경준 · 김용관 · 성일중 · 서일준 · 박성민 의원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심상정 · 강은미 · 김두관 · 김병욱 · 류호정 · 박상혁 · 배진교 · 이용선 · 이은주 · 장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문정복 · 김용민 · 김의겸 · 김주영 · 민형배 · 박영순 · 오영환 · 윤영덕 · 임종성 ·

장철민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민홍철 · 김두관 · 한정애 · 임호선 ·
전혜숙 · 윤호중 · 김승남 · 김병욱 · 양경숙 ·
신동근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23. 5. 31. 이현승 · 한무경 · 이주환 · 하영제 ·
김도읍 · 최영희 · 조경태 · 정동만 · 안병길 ·
김성원 · 송언석 · 김미애 · 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
요청안**

(2023. 12. 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12월 21일 정부에 송부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
요청안**

(2023. 12. 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무위원장 보고
12월 22일 정부에 송부

○보고서 제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비공개)**

(2023. 12.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상황 보고(비공개)

(2023. 12. 22. 정부 제출)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송부

○통지

중앙당 흡수합당에 대한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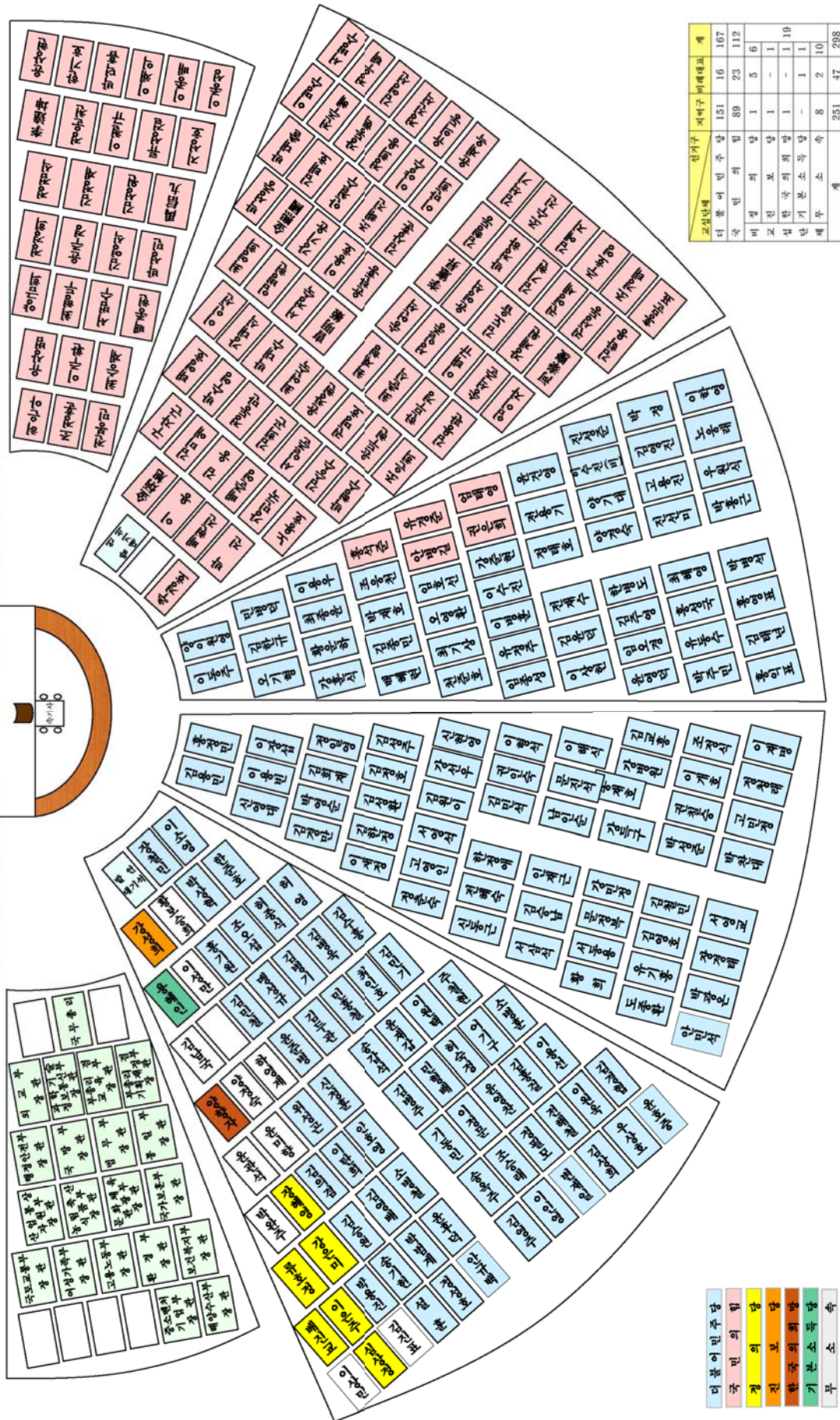
2023. 12. 2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중앙당 흡수합당 등록 통지가 있었음

존속하는 정당	흡수되는 정당	연월일
국민의힘	시대전환	2023. 12. 27.

국회소속기관부석

의사국장 의사국장 의사국장 의사국장 의사국장

국무위원보좌서



표시단어	친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계
더불어 민주당	151	16	16	167
국민의 힘	89	23	112	
바른미래당	1	5	6	
국민보통당	1	-	1	
한국국민회당	-	1	19	
한민족통일당	-	1	1	
새로운미래	8	2	10	
합계	251	47	298	